



합법적인 크롤링의 기준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풍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사람들은 검색창에 ‘선풍기’를 검색해서 쇼핑몰별 최저가를 찾아보고, 제조사별 기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는다. 이렇듯 검색엔진을 통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들이 나열된다. 이는 검색엔진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검색엔진은 다양한 정보를 보기 좋게 제공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데이터는 검색엔진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다. 최근 웹사이트의 정보를 긁어가는 크롤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사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명 ‘크롤링’ 행위에 대해 경쟁회사의 데이터를 크롤링한 타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A회사 직원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쟁회사인 B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였고, B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숙박업소 목록 등의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의 정보 호출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A회사 직원들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동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위반죄(동법 제93조 위반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A회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크롤링 행위를 구성하는 각 측면들을 나누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주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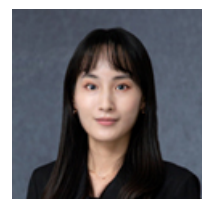
먼저 대법원은 A회사 직원들이 크롤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접근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 없이도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서버에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으므로 해당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A회사 직원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A회사 직원들이 B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복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A회사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B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A회사 직원들이 B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숙박업소 정보 검색 명령구문을 입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명령구문들이 해당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해당 판결은 타 서버에 접근한 행위, 타 서버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명령구문을 입력한 행위, 타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복제한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크롤링 행위가 각 부분에 있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한 것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플랫폼 업계는 해당 판결을 통해 크롤링 행위의 불법성과 합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잘 참고하여 자사의 재산은 보호하고 타사의 정보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TEL. 02 565 9801

E-mail. jhson@lkpartner.co.kr